#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19 발의연월일: 2020. 10. 23.

발 의 자:윤관석·고영인·김교흥

박찬대 • 이상헌 • 이성만

임종성 · 정일영 · 허종식

홍성국 · 홍정민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, 즉 산업자본이 금융 자본을 지배함에 따른 사금고화 우려 및 금융기능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.

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,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(CVC:Corporate Venture Capital)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, 일반지주회사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

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% 소유하도록 하면서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% 초과 금지,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,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.

또한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고,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현황,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상황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8조의4 신설 등).

### 법률 제 호

#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4(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)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8조의2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계열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(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
  - 2.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

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(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)

-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
- 2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7 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
- 3.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 경우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41조제1 항제1호,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
-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(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「여신전문금융 업법」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을 설립하는 행위
  - 가.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 한 투자조합

- 나.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 위하는 회사가 출자한 투자조합
- 다. 자신의 특수관계인(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)이 출자한 투자조합(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한정한다)
- 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(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를 하는 행위(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)
  - 가.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
  - 나. 자신의 특수관계인(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)이 출자한 회 사에 투자하는 행위
  - 다.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
  - 라. 총자산(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한다)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
- ④ 일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 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,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제9조"를 "제8조의4, 제9조"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제9조"를 "제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"로 한다.

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5항"을 "제5항, 제8조의4(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)제2항 및 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8조의4(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)제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 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 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
- 6. 제8조의4(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)제 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준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
- 7. 제8조의4(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)제 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
- 8. 제8조의4(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)제 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, 채권, 출자금 등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

제69조의2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8조의4제3항제2호·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 위한 자
- 1의2. 제8조의4제4항·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4(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
	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
	례)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8조의
	2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
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
	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	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
	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
	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
	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
	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
	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
	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
	용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
	소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
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	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	1. 계열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창
	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
	용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
	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
	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
	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

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(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- 2.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 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 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 우(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 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)
-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가 소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- 1.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
- 2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 각호이 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
- 3.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 경우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41조제1항제1호,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금 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
-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투자조합(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 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립하는 행 위
  - 가.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 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

<u>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</u> <u>자한 투자조합</u>

- 나.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출자한 투자조합
- 다. 자신의 특수관계인(동일 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) 이 출자한 투자조합(동일 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한정한다)
- 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투자(「벤처투자 촉진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를 하는 행위 (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투자를 포함한다)
  - <u>가.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</u> <u>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</u> <u>위</u>
  - 나. 자신의 특수관계인(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)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
  - 다.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

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라. 총자산(운용 중인 모든 투 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 한다)의 100분의 20을 초 과하는 금액을 해외 기업 에 투자하는 행위

④ 일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 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 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 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, 출자자 내역 등을 공 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탈법행위의 금지) ① 누구 제15조(탈법행위의 금지) ① ----든지 제7조제1항, 제8조의2제2 항부터 제5항까지, 제8조의3, 제

<u>9조</u>, 제9조의2,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② (생략)

제16조(시정조치 등) ①공정거래 저 위원회는 제7조제1항,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8조의 3, 제9조, 제9조의2, 제10조의2, 제11조, 제11조의2부터 제11조 의4까지 또는 제15조를 위반하 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[제 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 업결합 당사회사(기업결합 당사 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 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 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 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] 또는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2조제6항 단 서에 따른 신고를 받아 행하는

8소의4, 제9소
②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시정조치 등) ①
제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
지, 제9조

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- ③ 삭 제
-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 ④-----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)제 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 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 제한에 관한 특례)제2항 및 제3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1. ~ 4. (생 략) <신 설>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과징금) ① · ② (생 략) 제17조(과징금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- -----제5항, 제8조의4(일반지 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
  - 1. ~ 4. (현행과 같음)
  - 5. 제8조의4(일반지주회사의 금 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 한 특례)제2항을 위반한 경우 에는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 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
  - 6. 제8조의4(일반지주회사의 금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69조의2(과태료)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억원 이하, 회사 또는 사업자단 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.

융회사 주식	나 소유	제한에	관
한 특례)제3	3항제1호	호를 위법	<u> 반한</u>
경우에는	기준대	차대조표	<u> 돈상</u>
<u> 자본총액의</u>	2배를	초과한	부
채액			

- 7. 제8조의4(일반지주회사의 금 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 한 특례)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
- 8. 제8조의4(일반지주회사의 금 응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)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, 채권, 출자금 등의 기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

제69조의2(과태료)	1

<u>&lt;신 설&gt;</u>	1. 제8조의4제3항제2호·제3호
	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
	<u>험업을 영위한 자</u>
<u>&lt;신 설&gt;</u>	1의2. 제8조의4제4항·제5항에
	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
	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
	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
1. (생략)	<u>1의3</u> . (현행 제1호와 같음)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